

첨가제의 배출가스검사 시험절차(제11조 관련)

1. 첨가제 배출가스 검사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가. 제11조의3 검사용 자동차의 요건에 맞는지 확인한다. 다만, 제11조의3제4호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만족여부 확인은 첨가전 검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별표 4 제1호사목의 방법으로 확인한다.

나. 시험자는 검사의뢰자의 입회하에 검사용 자동차의 연료탱크 내에 남아 있는 연료를 제거하고, 연료와 시험용첨가제를 최대첨가비율로 혼합하여 연료탱크에 주입한다.

다. 시험자는 검사용 자동차의 연료탱크 주입구를 봉인한다.

라. 검사의뢰자에 의해 검사용 자동차를 100 km 이상 도로주행한다. 단, 주행거리는 검사의뢰자의 요구에 따라 2배까지 주행할 수 있다. 다만, 원동기에 의한 배출가스 시험은 검사기관에 의해 2시간 이상 가동할 수 있다.

마. 주행 후 시험자는 검사의뢰자의 입회하에 검사용 자동차의 연료탱크 주입구의 봉인을 확인한다. 봉인이 훼손된 경우에는 검사용 자동차를 다시 선정한다.

바. 시험자는 검사용 자동차의 연료탱크 내에 남아 있는 연료가 배출가스 시험에 적절한 양인지 확인한다. 부족한 경우에는 검사용 시료를 보충한다.

사. 배출가스 검사는 규칙 별표17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배출가스 시험방법을 선정하고, 환경부 고시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한다. 단, 휘발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시험모드는 CVS-75에 따르며(증발가스, 탄화수소, 블로바이가스, 탄화수소 및 RDE는 제외),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시험모드는 WLTP, ND13, WHSC 및 WHTC에 따른다(NH_3 , RDE는 제외).